

“ 음식물 쓰레기 50% 줄입니다 ”

공보 423호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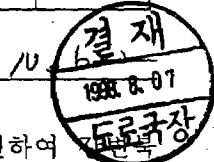
우 100-744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8153~4 / 전송 3707-8169
처리부서 도로관리과(시청제2별관 3층) 과장 정동진 계장 박갑만 담당 한정무

문서번호 도관58710-947
시행일자 1998. 8. 7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취급		시 장
보존	년	정동진
국장	전 결	
과 장	정동진	법무담당관심사필
계 장	박갑만	
기안	한정무	협 조

제목 마포대교진입램프 통행금지공고



1.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포대교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에서 마포대교로 진입하는 램프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법 제5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통행금지 공고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1) 통행금지 공고(안)

2) 위치도.

서울특별시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 구분 : 공고

나. 게재 건명 : 통행금지

다. 게재 내용 : 따로붙임

라. 법적 근거 : 도로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원본대조필

32103

따로붙임 (1) 통행금지 공고(안) 2부. 끝.

도 로 관 리 과 장

(제3안)

수신 서울지방경찰청장

참조 교통관리과장

제 목 통행금지 공고 통보

1. 도관58710-908('97.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마포대교확장공사로 인하여 강변북로에서 마포대교진입램프의 통행을 도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의 공고(안)과 같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통행금지 공고(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4안)

수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참조 교량관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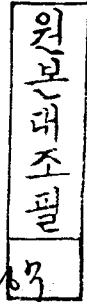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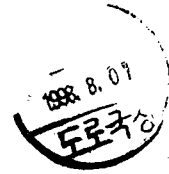
제 목 통행금지 공고 통보

1. 교관58710-917('98. 7.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강변북로에서 마포대교진입램프에 대한 통행금지를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공고(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통행금지 및 우회로에 대한 안내표지를 사전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통행금지 공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시·군·구	1998. 8. 6	제 426호
발급자	별제공사직장	별제공사직장
이동부	김광배	김광배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 - 423 호

통행 금지

도로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199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원본(대조필)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노선명	· 강변북로
금지의 대상	· 강변북로 ⇒ 마포대교 진입램프		
구간	· 진입램프 전구간		
기간	· 1998년9월1일부터 진입램프공사 완료시까지		
이유	· 마포대교확장공사에 따른 진입램프 선형 변경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전화번호 3707-8153~4)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전화번호 3708-2389~90)		
위치도	(생략) ·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에 도면 비치		
기타	· 우회로 : 강변북로에서 서강대교진입램프 이용		

